

## 소 장

원 고 ㅇㅇ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◇◇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###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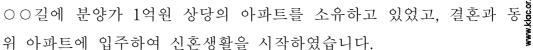
### 청 구 취 지

- 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### 청 구 원 인

- 1. 당사자의 지위
  - 원고와 피고는 2000. 0. 0. 협의이혼 하였습니다.
- 2. 재산의 형성과정
  - 가. 원고는 결혼 전부터 ◎◎상사에 근무하면서 저축한 급여로 ○○시 ○○구



- 나. 결혼당시 피고는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수입이 없었습니다.
- 다. 결혼 후에도 원고는 출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졸업할 때까지 생 계를 책임질 위치에 있어 계속적으로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.
- 라. 원고는 피고가 대학을 졸업하여 직장에 취업하던 해에 직장을 퇴사하여 전 업주부로서 아이의 양육에 전념하여 왔습니다.
- 마. 그런데 피고는 다니던 직장을 사직하여 퇴직금으로 약 3년간 개인사업을 하였으나 실패하여 모든 면에서 자신감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게 자신감을 주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있던 아파트를 처분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의 명의로 구입하였습니다.
- 바. 그런데 피고는 다시 직장을 얻게 되자 별다른 사유가 없음에도 외박을 자 주 하더니 원고를 냉대하는 등 원고를 괴롭혀 피고와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.
- 사. 원고와 피고의 재산형성과정을 보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구입자금에 피고가 기여한 바는 전혀 없으므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 라고 할 것이며. 피고에게 자신감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편의상 피고명의로 명의신탁 한 것입니다.

#### 3. 결론

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별지목록 기재의 부 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,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

#### 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

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

1.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

1. 갑 제3호증

혼인관계증명서

1. 갑 제4호증의 1

매매계약서(구 아파트)

1. 갑 제4호증의 2

매매계약서(피고명의 아파트)

## 첨 부 서 류



1. 위 입증방법각 1통1. 토지대장등본1통1. 건축물대장1통1. 소장부본1통1. 송달료납부서1통

2000. 0. 0.

위 원고 ㅇㅇㅇ (서명 또는 날인)



# 부동산의 표시

- 1.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대 ㅇㅇm²
- 1. 위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 지붕 단층주택 ○○㎡. 끝.

				ō
관 할 법 원	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	○○년(☞소멸시효일람표)	w.klac
		기 간	※ 아래(2)참조	M.M.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	
비 용	·인지액 : ㅇㅇㅇ원(☞산정방법) ※ 아래(3)참조			
	•송달료: 000	원(☞적용대상	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
불복절차	・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			
및 기 간	·판결서가 송달된	날부터 2주 여	기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	[항)

### 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- 2.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3. 등기·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4.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 또는 등기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
#### ※ (2) 소멸시효

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명의 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에 기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 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, 이와 같은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.(대법원 1991.11.26. 선고 91다34387 판결)

### ※ (3) 인 지

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